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향

박 종 철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부이사관

I. 개 요

'98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여 노사자율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자체검사원 직무교육 관련 조항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의 정이나 노동부의 감독상의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타노동관계법령간에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에 관련된 것도 일부 포함되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노사자율관리체제의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의 신설은 노사자율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법에서 이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토

록 한 것으로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신설하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해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금지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노동관계법 등과 균형적 조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권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예와는 다른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본다는 규정을 명백히 하였다.

노동부의 감독권한을 거부 방해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도 근로기준법 등과 형평에 맞도록 이를 조정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등이 완화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즉, 자체검사원 직무교육 근거조항의 삭제,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비치의무로 전환하는 것 등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법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다.

3. 건설안전관련 주요개정 내용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내용은 종전에 영업정지 요청대상을 제23조의 안전상의 조치와 제24조의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해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시에 3인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대부분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하도급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건설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가 위험공종만 분리하여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원청업체의 사업주는 하청업체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안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금형 등의 제재는 사업주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3인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3인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등 지원이 강화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전에 건강관리수첩을 석면, 특정분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작업후 이직시에만 발급하던 것인데 이번 개정에서 일정기간 이상 작업한 종사자는 재직중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사업장을 이직하지 않고 동일사업장에서도 작업을 전환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발급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자율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선진국은 안전관리를 경영의 핵심부분으로 삼아 경영조직체제내에 재해예방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사의 참여속에 객관적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정책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의 책무에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현재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분야도 각종 법상의 규제를 재검토할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 중 핵심적인 규제는 존치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차적인 사항이나 중복적인 성격의 규제 등을 정비하였다.

보호구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인력·시설 기준은 보호구의 검정제도와 중복적인 규제가 되어 삭제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삭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모든 측정 결과를 사업주가 노동관서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산소결핍작업의 경우 매측정시마다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고의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어 측정보고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것도 근로자의 산업안전확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Ⅲ. 맺음말

전반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노사자율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노동관계법 및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균형상 필요한 사항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입법상 미비점으로 지적된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규제완화의 분위기에서 대폭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완화되는 것은 대부분 이미 지난해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완화된 내용이고, 일부 중복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정비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제도 강화 등 노사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전 사고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 사고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가설물의 완벽한 설치·방호조치 및 안전장치의 설치, 자재·기계의 적치 및 작업장소의 결합제거, 정리정돈의 철저, 보호구 및 안전장구의 활용, 자연 및 주변상황에 대한 순응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곧 재해예방 기본대책이다.

-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안전한 자세·동작의 작업, 기계·기구의 정확한 취급, 위험한 장소에의 접근금지, 무리한 속도 및 무리한 행동의 작업실시 엄금, 정리정돈 및 청소청결 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임무가 된다.

